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유해약물에 담배유사제품 추가 및 담배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자동기계장치 등의 설치장소 제한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43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유해약물에 담배유사제품 추가 등	3
2.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자동기계장치 등의 설치장소 제한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6. 27.
3.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

매장치에서의 전시·진열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유해약물에 담배유사제품 추가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에 담배유사제품(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 니코틴, 유사니코틴,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가목 2)의2 신설 및 제59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4. ----- ----- ----- ----- ----- -----.
가. 청소년유해약물	가.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2)의2 <u>담배유사제품[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말한</u>

3) ~ 5) (생 략) 나. (생 략) 5. ~ 8. (생 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u>제2조제4호가목1)·2)의</u>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u>다), 유사니코틴(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원료나 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체내로 흡입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2조제4호가목1)·2)· <u>2)의2</u>----- ----- ----- ----- -----
---	---

로 무상 제공한 자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

현행법¹⁾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배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사업법」²⁾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나,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지 않음.

< 담배의 종류 및 비교 >

구분	연초(담배풀)		합성니코틴
	잎	잎 외(줄기, 뿌리 등)	
「담배사업법」상 담배,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	X	X
비교	곶련, 엽곶련(시가), 씹는 담배, 물담배, 전자담배 등		주로 전자담배(액상형 등)

또한, 현행법³⁾은 청소년유해물건도 청소년에 대하여 판매·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⁴⁾ 및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⁵⁾는 현행법 제2조제4호나목³⁾ 및 현행법 시행령 제4조제3항⁶⁾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및 담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청소년유해물건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4)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참고자료)

5)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참고자료)

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형태의 흡입제류를 판매·배포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그런데, 연초의 잎이나 잎 외의 부분(줄기·뿌리 등) 또는 합성니코틴⁷⁾을 이용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⁸⁾⁹⁾¹⁰⁾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020년 1.9%에서 2024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

(단위: %)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¹⁾	전체	2.2	2.7	3.2	1.9	2.9	3.3	3.1	3.2
	남자	3.3	4.1	4.7	2.7	3.7	4.5	3.8	4.7
	여자	0.9	1.1	1.5	1.1	1.9	2.2	2.4	1.5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²⁾	전체	-	-	2.6	1.1	1.4	2.3	2.1	2.6
	남자	-	-	4.0	1.6	1.8	3.2	2.7	4.0
	여자	-	-	1.2	0.5	0.8	1.3	1.4	1.2

1.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2.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 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의 '2024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

- 7)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의미함(박은희, 「합성니코틴」, 「담배규제팩트시트」, 2022).
- 8)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상 니코틴 유해성 평가'(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2012년, p.53)에 따르면 니코틴의 성인 치사량이 40-60mg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함량의 전자담배를 2mL정도만 흡입하여도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9) '합성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국제특성분석연구소, 2024년, p.6)에 따르면, 니코틴 원액의 비표적 분석 등을 통해 69개 유해물질 항목을 선정해 원액 상 해당 물질 포함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했으며, 연초 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2,509mg/ℓ의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개 항목에서 23,902mg/ℓ이 검출되었음.
- 10)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고, 대마초·알코올 등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함('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과제, 이슈와 논점 제2371호, 2025.6.11., 국회입법조사처)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에 담배유사제품을 추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의 정의에 포함¹¹⁾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¹²⁾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¹³⁾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온라인 판매금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 규제 제도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를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¹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원료

11)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줄기·뿌리 등 연초의 잎 외의 부분과 니코틴 등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유사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담배의 정의 확대

1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현황(2025. 8. 11. 기준) >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22017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2024. 7.15.
220247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2024. 8. 1.
22025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2024. 8. 5.
220287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2024. 8.16.
22028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2024. 8.16.
22046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2024.10.10.
22050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2024.10.30.
22050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2024.10.30.
22051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2024.10.31.
22055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2024.11.13.
22113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2025. 7. 7.
22117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2025. 7 28..
22119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2025. 8. 5.

13)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연초의 줄기, 뿌리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를 담배에 포함시키는 등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제422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록(2025. 2.10(제1차), 2025. 2.18(제2차) 참조]

14)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제9조), 담배

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유사담배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는지 심사경과를 지켜본 후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담배유사 제품은 청소년유해약물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물건도 청소년에 대하여 판매·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¹⁵⁾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나, 담배유사 제품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한 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담배 등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최근 유사니코틴 뿐만 아니라 무(無)니코틴 제품¹⁶⁾ 등 규제외 사각지대를 파고든 신·변종 담배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

경고문구 등의 표시(제9조의2), 가향물질의 함유 표시 제한(제9조의3), 담배 광고 금지 또는 제한(제9조의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제23조) 등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15)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참고자료)

16)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 또한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5.3.26.,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품들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신중검토 및 효과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임.

2.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자동기계장치 등의 설치장소 제한

개정안은 해당 업소에 청소년 판매 등의 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담배유사제품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를 추가하고,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5조,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⑤ ----- ----- 주류, 담배 또는 담배유사제품(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을-----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담배유사제품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대여·배포하는 자</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설>	⑪ <u>담배유사제품은 자동기계장치</u>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생략)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7호의2·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u>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1. <u>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u> 2. <u>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설치하는 경우</u> 제45조(시정명령) ①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u>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유사제품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u>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 ----- 제7호의2·제7호의3----- -----
--	---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먼저, 개정안은 해당 업소에 청소년 판매 등의 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담배유사제품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8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에게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¹⁷⁾,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는지 심사경과를 지켜본 후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은 담배유사제품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전시·진열을 금지하되, 해당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¹⁸⁾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17) [참고자료] 참조(술·담배 판매업소 유해표시 의무)

1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담배유사제품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설치 장소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대상으로¹⁹⁾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장소와 상이하며,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 등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자동기계장치 등의 설치제한 장소를 담배와 담배유사제품을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할 합리적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19)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로 해석됨.

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관련 규정 비교 >

개정안 제28조제1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판매·대여 등의 금지) ⑪담배유사제품은 <u>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u>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u>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확대될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제9조), 담배 경고 문구 등의 표시(제9조의2), 가향물질의 함유 표시 제한(제9조의3), 담배 광고 금지 또는 제한(제9조의4)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확대될 경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의 설치를 제한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해표시 의무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담배유사제품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의 영업자’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담배유사제품과 기존 담배를 다른 법령에 다른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6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1. 11. 25.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57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개정 2017. 10.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7. 12. 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5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술·담배 판매업소 유해표시 의무(「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6])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표시장소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6]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